#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318 발의연월일: 2021. 5. 24.

발 의 자:서삼석·강병원·강선우

김민철 • 김승원 • 김영배

김영주 · 김영진 · 김원이

김정호 · 김종민 · 김철민

도종환 · 서동용 · 서영교

신동근 · 신영대 · 윤미향

윤재갑・윤준병・이개호

이상헌 • 이수진 • 이용선

임호선 • 주철현 • 최종유

홍정민 의원(28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도시 중심의 압축성장과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 인구·사회·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, 농어촌은 20~30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인력 부족 및 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 는 추세임.

이러한 농어촌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.

다만, 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, 전년도 시행계획 점검결과에 따른 제반조치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예산 반영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개선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임.

이에 시행계획 점검ㆍ평가 결과 부진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제도 개선 사항과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,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담보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(안 제9조의2 및 제10조제2항제3호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2(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) ① 위원회는 제 9조제2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추진 실적이 미흡한 사업 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 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3의2.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제9조의2(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) ① 위원 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추진 실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도 개선 및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.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.
	통보하여야 한다.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제10조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) ① (생 략)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.
- 1. ~ 3. (생략) <신 설>

4. • 5. (생략)

③ ~ ⑨ (생 략)

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 보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 계획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.

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 행계획서에 관한 사항

4. • 5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⑨ (현행과 같음)